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 성범죄 피해자 전역 특례 신설〉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21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 인사관리 제도 ..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3.
3. 회부연월일 :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인은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역할 수 없으며, 전역하기 위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질병·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의병제대를 해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등으로 전역하는 경우 전역 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군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쉽게 전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이나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후속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원에 의한 전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중 「 <u>군형법</u> 」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6까지의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이라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① ----- ----- ----- ----- -----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현행	개정안
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등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때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군 의무복무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역할 수 없으며, 전역하기 위해서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¹⁾ 심신

1)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

장애 등을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의병제대²⁾를 해야 하므로, 성범죄 피해만을 사유로 한 자의적 전역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음³⁾.

□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입었더라도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전역이 가능함.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역 후 사회생활이나 취업 과정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등의 사유가 기록에 남을 우려가 있어, 군 성범죄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하여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쉽게 전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⁴⁾.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9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장교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은 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부사관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3) 「군인사법」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③ 그 밖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의 전역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조 제1,2항은 징계 대상자 등이 자의로 전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임.

제3항의 해당 전역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해당 시행령(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음.

4) 다만,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접수 현황을 관리 중이나,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6까지 범죄 행위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해당 피해자 중 현역복무

□ 이에 개정안은 군 성범죄 피해자에게 의무복무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복무 지속이 초래할 수 있는 2차 피해 및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에 따른 사회에서의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자 함.

□ 특히, 개정안이 원에 의한 전역 가능 사유로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6까지에 해당하는 범죄⁵⁾는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중 비교적 그 수위가 경미한 것이 아닌 강간, 추행 등 그 죄질이 중한 범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전역 선택권 부여는 피해자 보호 중심의 군 인권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부적합 판정 제대 / 의병 제대 / 현역 복무를 마친 인원수를 각각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임.

5)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를 기반으로 한 병역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의무복무의 예외를 허용하는 입법은 국민적 형평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에게는 예외를 허용하면서, 예컨대 중대한 폭행, 지속적인 가혹행위, 인권침해 피해자 등에게는 동일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타 피해유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역을 허용할 수 있는 통합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전투력 유지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6에 해당하는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유로 의무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전역 허용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휴가·휴직·분리조치 등 기존 인사관리 제도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존 인사관리 제도는 참고자료 참조

□ 종합적으로, 군이라는 폐쇄적이고 계층적인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라도 인권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전역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이나,

이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의 실효적 운영과의 병행 여부, 군 인력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현행 「군인사법」상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정안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자의적 전역을 허용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유일한 특례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현재 군 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휴가, 휴직, 분리복무, 전환보직 등의 인사관리 제도를 이미 운용 중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 인사관리 제도

○ 성범죄 피해자가 활용 가능한 휴가 제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성범죄 피해자가 활용 가능한 휴직 제도

「군인사법」

제48조 (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제49조 (휴직기간)

①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관리 제도

「국방 인사관리훈령」 제6장 제5절 성희롱·성폭력 가·피해자 인사관리 제191조(인사관리 원칙)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모든 인사조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일상회복을 최우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인사조치 간 발령되는 인사명령은 수신처를 최소화하여 피해사실 노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92조(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휴가, 휴직 등을 희망할 경우 소속 부대장(기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인사법」에서 정한 휴가와 휴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3조(가·피해자 분리)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속 부대장(기관장)은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②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때에는 「부대관리 훈령」 제250조의3을 적용한다.

③ 피해자를 인사조치할 경우 인사조치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부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94조(사건 종결 후 인사관리)

① 사건 종결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 또는 동일 주둔지 내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관리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인사관리 기간을 연

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인사이동은 피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인사 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시인사가 가능하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부대분류 심의 또는 보직심의 시 성고충예방 대응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 또는 동일 주둔지 내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 또는 동일 주둔지 내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95조(피해자 필수보직 관리)

① 피해자가 필수보직 근무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인사이동할 경우 보직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필수보직 근무기간의 1/2 이상 근무한 경우 : 필수보직 이수로 인정

2. 필수보직 근무기간의 1/2 미만 근무한 경우 : 심의에 따라 인정여부 의결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필수보직을 미이수하게 된 경우, 차기 인사 시 필수보직 이수기회를 우선 부여한다.